

테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K554R5E10410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테라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사모형"이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1.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2.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테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라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 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 시행령 제2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271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의5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 내역의 일치여부 확인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를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7.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8.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9.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10.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 청구한 때로부터 이 신탁계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최소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신탁원본액”이라 한다)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7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설정)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전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최초설정시 적용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그 밖에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의 결과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수익증권의 양도 시 양수인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익자명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투자신탁 합병 승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공모주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4조 제1항의 증권(IPO 관련 증권 포함)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후순위채권, 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 ④ 이 투자신탁은 제3항의 “공모주식”투자에 있어 의무보유 확약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
- ⑤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⑥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 ⑦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1호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2.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1호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② 이 투자신탁은 본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본 조 제1항, 제2항의 경우와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라. 환매조건부 매도
 - 마.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
3.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은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8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운용행위 감시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핵심상품설명서가 관련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반투자자의 총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 3에 따른 부동산·특별 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3 제1항에 따른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 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 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제21조(판매가격)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설정일"이라 한다)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제30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익증권의 환매)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초 설정일부터 1년6개월간은 환매청구

를 할 수 없다.)

-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실질수익자(법 제3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② 제22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차감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환매연기)

- ① 제22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한 사항
 - 나. 환매가격
 -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⑥ 환매연기사유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⑧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상응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청구를 한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⑩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5조(집합투자재산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기본운용보수 이외의 성과보수를 정한 경우 기준가격 산정 시 성과보수 부분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회계기간 중 임의결산을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결산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임의결산일) 익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제2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회계기간의 말일
 -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29조(이익분배)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등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 또는 현금으로 분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 및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이익 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익초과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준일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영업일
 2. 지급일 : 지급기준일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영업일
 3. 지급금액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

제30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3조(보수)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월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제34조(성과보수)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집합투자업자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항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가. 수익자가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첫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 수익자의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기간 말일까지
 - 나. 가목에 따른 회계기간 이후에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 회계기간 초일부터 매 회계기간 말일까지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회계기간 초일부터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금액 : $\text{Max}[\text{초과수익금액}(1) \times \text{성과보수율}(2), 0]$

나. 계산방법

(1) 초과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3) - 취득가액(4)
(2) 성과보수율	15%
(3)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 좌수*해당일에 계산된 1좌당 결산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좌수 * 1좌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4) 취득가액	매입좌수 * 1좌당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만, 매수 후 첫 회계기간 이후에는 해당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5)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

3. 성과보수 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4)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않는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이익분배금 범위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까지 이연되며, 다음 이익분배금 지급일에 당해 이연된 성과보수와 해당 성과보수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해당 이익분배금으로부터 취득하되 이연된 성과보수를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성과보수 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2.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일부 환매된 금액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3. 수익증권의 전부 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취득한다.

⑤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⑥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다음과 같다.

1.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사항

성명	담당업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심현보	이사	투자운용	現테라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운용역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 해당사항 없음

제35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타 운용비용 등)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5.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6.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7.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이라 함은 제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비용(해당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 ④ 제5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해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 발생 시 해지 전 업무를 수행했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해지 후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8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7조(신탁계약의 변경)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이상의 수익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38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 변경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조 제4항에 의한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합병·분할·분할합병
 -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신탁업자의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합병·분할·분할합병
 -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4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1. 대상금액 : 제33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 2.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신탁의 해지)

-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 9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1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3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매연기의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5조(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관련법령·신탁계약·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38조 적용과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7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302
호 (여의도동, 신태진빌딩)
주식회사 테라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동 환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병 윤 (인)



2024. 09. 24